

학교안전사고를 규율하는 특별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pecial Laws Regulating School Safety Accidents

김 성 욱*
Kim, Sung-Wook

목 차

- I. 서 론
- II.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
- III.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적용 및 해석과정에서의 몇 가지 법적 문제
- IV. 결 론

국문초록

본고의 제목은 “학교안전사고를 규율하는 특별법에 관한 연구”라고 정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 내지 예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법 제도라는 것은 정의를 실현할 목적으로 사회질서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법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모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교육활동 등의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인에

논문접수일 : 2019.10.29.

심사완료일 : 2019.11.20.

게재확정일 : 2019.11.20.

* 법학박사·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장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활동 등의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 또는 체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수업시간 또는 체육활동 이외의 시간동안에도 적지 않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학생 등은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학생 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신체침해를 입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제주도의 초등학교에서 보다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학교안전사고의 당사자인 학생이나 교사, 학교법인 등에게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교사·학생·학부모 간의 윤리적 또는 교육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에서는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규율하고 있는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당해 특별법의 관련규정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적용상 또는 해석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제어 : 학교, 수업, 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서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7년 학교안전사고가 2016년 대비 3.3% 감소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에는 학교안전사고가 2512건 발생했고 2017년 2430건으로 83건, 학교 그룹별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전년 대비 각각 14.4%, 6.3%의 감소하였지만, 오히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특별활동행사시간과 등하교시간에 각각 18.6%, 11.2% 감소하였고, 장소는 부대시설(화장실, 옥상, 주차장 등)에서 20%, 운동장 및 운동장 주변에서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많은 체육활동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전체 사고 67.5%)한 것으로 집계되었다.¹⁾

전술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발표내용과 같이,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안전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공교육을 대표하는 초중고 등의 교육기관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성장기의 학생들이 필연적으로 공동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 및 체육활동 등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아무리 필요한 주의의무 등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교육활동이 종료된 후라도 학교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연령의 차이 또는 학교에 머무는 시간 등에 대비하여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언제나 높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동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책임능력이 부정될 정도로 미성숙한 정신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개연성이 있는 것이며,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입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습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는 학교에서 교육활동 기타의 활동을 하는 과정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학생 등을 구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고 한다)이 어떠한 배경에서 제정되었으며, 당해 법률이 다른 법률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당해 법률의 적용 및 해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중에서 특히 학교안전공제보상 심사위원회의 구성, 과실상계 법리의 유추적용, 「학교안전사고보상법」시행령상의 과실상계 규정, 구상권의 행사 등에 한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²⁾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표한 보도내용 중에서 특히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관련한 사고를 유형화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쟁 활동에서는 73.6%가,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발다리(41.0%), 손팔(34.2%) 부위에 빠임(46.2%), 골절(16.0%), 타박상(16.5%) 등의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한다(국제뉴스, 2018. 4. 18. <http://m-news.korea.com/view/normalview.asp?page=638&cid=MH&scid=MH6&sn=54874996>).

II.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입법배경과 주요 내용

1. 입법배경³⁾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해 주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7년에 제정된 특별법이다. 전술한 법률이 제정된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술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교사와 학교장의 가해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이 귀속되었고,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소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 등이 귀속되었다. 그런데 학생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5조가 적용될 경우에는 학교장뿐만 아니라 담당교사에게도 감독자책임이 귀속됨으로서 담당교사는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법적 책임의 귀속으로 인하여 교사와 학생 등이 학교안전사고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교육 및 학업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⁴⁾ 이후 1987년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사단법인의 형태로 학교안전공제

2)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논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것을 참고할 것. 한경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 산정 시 기왕증 참작과 과실상계를 허용한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연구 제29집, 부산판례연구회, 2018; 김선정, “학교안전공제의 특성과 시행령의 위법성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생명보험 통권 제459호, 생명보험협회, 2017; 장승혁, “학교안전공제 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장내용과 대상”, 새교육 통권749호, 한국교육신문사, 2017.

3) 이하의 부분은 주로 다음의 것을 참고한 것이다. 박주영,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0권제2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7; 김상훈,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와 과실상계”, 대법원판례해설 제93호, 법원도서관, 2013.

4) 박주영, 전제논문, 11면.

회가 설립되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보상업무를 상호부조적인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된 초기에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폐휴지의 매각대금으로 보상금이 충당되었고, 그 이후에는 공제회비 각출,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었다. 이후 1991. 5. 31. 제정 및 시행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서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교원·학생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지만 구체적인 법률은 10년 이상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종전의 사단법인 형태의 학교안전공제회는 보상기준이 시 및 도에 따라 각각 상이하였고, 법적 근거가 부존재한 상태에서 상호부조의 형태로만 운영됨으로써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예방 및 보상 등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에 제정된 법률이 바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인데, 이 법률은 종래의 다양한 문제점 해소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개정을 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특징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사와 학교 측 등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관련 피해자를 적절하게 구제할 수 있는 공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첫째, 일반법의 지위에 있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평적 관계에 있는 사인을 전제로 하면서 과실 책임에 기초하여 관련 분쟁사안을 해결하지만,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특별히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교사나 학교 측에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보험의 일환으로 원칙적으로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업시간 중에 안전사고가

5) 김성욱, “체육수업시간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 재산법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019, 171-172면

발생하게 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둘째, 학교안전공제회의 가입자 및 피공제자 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에 대대하여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을 실시해야 한다(제11조). 그리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여야 하며(제15조), 공제회는 공제급여 지급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제18조 제1항 제2호). 또한 학교⁶⁾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며(제12조),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재직 중인 교직원·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한 교육활동참여자는 지급공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제14조 제1항).

셋째, 공제급여의 종류, 지급범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제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이 있다(제34조).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상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제외하고 「국가배상법」상의 산정방식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공제급여는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실손해 전액보상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의 민사책임이 전부 면제된다.⁷⁾

넷째, 급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하면, 피공제자가 자해·자살한 경우,⁸⁾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그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 등을 따르지 않고서 피공제자의 부상·질병 또는 장해 등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

6) 학교에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한다(제2조 제1호).

7) 강희원, 김상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 제 7호, 한국법제연구원, 2013, 129면은 현행방식에 대해 사회보험의 취지와 재원 등을 고려한다면 실손해의 전액이 아니라 일정액(또는 일정비율)에 대한 공제급여만을 지급하고 실제로 발생된 손해가 지급을 받은 공제급여를 초과한다면 피해학생 등은 고의, 과실이 있는 학교장 등을 상대로 하여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률보상방식’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

8)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

기관의 치료를 방해하였던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수급권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제43조).

3.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주요내용

(1) 학교안전사고 예방(제5조·제6조 및 제8조)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⁹⁾의 규정에 따른 교육부 소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설립(법 제11조·제12조 및 제15조)

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1항), 전술한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술한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항).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4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5항).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현재 시·도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교육감은 관할 구역별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를 설립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외국인 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및 평생교육시설, 초·중등학교의 학교장 등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되도록 하며, 외국인 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치원 및 평생교육시설, 초·중등학교의 학교장 등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가입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정하게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등(법 제28조·제29조 및 제32조)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전국적으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였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재정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출연하는 분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적인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수행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4) 공제급여의 종류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법 제34조·제44조 및 제45조)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학생·교직원 등 피공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내용과 제한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 피공제

자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장해급여 등의 공제급여를 지급하되, 피공제자의 자해·자살 또는 고의로 인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공제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공제자가 이 법에 의한 공제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있는 다른 학생·교직원 등은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제급여의 종류·내용과 급여 제한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피공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직원의 재산상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책임 있는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5) 공제료의 산정기준(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학교장 등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가입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공제료의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였는데, 교육부장관은 매 공제연도마다 전전연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학교안전공제회는 그 산정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 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의 지급 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를 산정하여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제료의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각 학교안전공제회는 그 산정기준에 따라 공제료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각 학교안전공제회의 실정에 맞게 공제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6)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법 제57조 및 제61조)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공제급여 지급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제급여의 결정에 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였는데,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설치된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설치된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공제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제급여 결정에 관한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Ⅲ.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적용과정에서의 몇 가지 법적 문제

1. 학교안전공제보상 심사위원회의 구성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의 학부모는 피해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 공제급여 청구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고개요를 작성해서 제출한 후에 학부모가 작성한 사고개요와 함께 필요로 하는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발송하는 방법 또는 진단서와 진료비, 약제비 등의 영수증과 피해학생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인(학부모)의 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에 제출한 후 학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렇게 학교안전공제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하게 되면, 학교안전공제회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제급여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 학교안전사고에 기한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이의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제57조제1항). 다만 전술한 이의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57조제2항).¹⁰⁾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는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한 자를 대상으로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설치된 기구이며,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58조제2항).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¹¹⁾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변호사의 자격

10)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 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57조제2항단서).

이 있는 자,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자,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학부모 대표, 그밖에 전술한 자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 등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제58조제3항). 그런데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의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교사 및 학부모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 구성에 있어서는 극히 극소수이어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일정 수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¹²⁾ 그런데 공제결정의 적절성 및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적 판단이 아니고 규범적 판단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교사 및 학부모 대표를 일정 수 이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것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이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하면서 기타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균형적인 구성으로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 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하여 약간의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이 학교안전공제회 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가 설치되면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위원들은 공정성이 담보되는 의견을 개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결정을 사실상 수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개연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안전공제회 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를 두기 보다는 독립된 기구로서 운영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결정의 적절성 및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2. 과실상계 법리의 유추적용

1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12) 김대규,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의 민사 책임”,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12, 102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발생에 피공제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공제급여액을 결정함에 있어 피공제자 측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지, 즉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관련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사건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째,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교육감·학교장 등에게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책무를 부과하면서,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교육감·학교장 등이 학교 안전사고발생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안전사고로 일정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등의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고, 부득이 하게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둘째,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적으로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는 그 입법취지나 목적이 다르다. 그러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관련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¹³⁾

생각건대,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을 살펴보면, 급여제한 사유로서 3가지를 규정¹⁴⁾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또는 준용규정 등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인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사실의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과실상계는 채무자 또는 가해자

13)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14)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하면,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공제자의 자해·자살.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 2.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질병 또는 장애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3조).

에게 귀책사유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원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96조, 제763조).¹⁵⁾ 그런데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학교·교직원 등의 귀책사유의 존재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관련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대방의 귀책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고려되는 과실상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전제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⁶⁾ 물론 무과실 책임인 담보책임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더라도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배상권리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 종래 판례의 입장이다.¹⁷⁾ 그런데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법정된 범위에서만 직접적으로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판례입장과 같이 민법상의 담보책임에서도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는 전제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의 공제급여제도는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된 범위에서만 보상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논의되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과도 그 전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공제급여액을 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또는 준용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¹⁸⁾

15)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상계 항변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473 판결)

16) 과실상계를 부정하는 견해 및 긍정하는 견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것을 참고할 것. 김상훈,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와 과실상계”, 대법원판례해설 제93호, 법원도서관, 2013.

1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18)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에서 대법원은 유사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분쟁사항을 해결하였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체육중학교 레슬링부 학생인 원고 갑은 2008. 1. 11. 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동계훈련을 하는 중에 상대방 선수와 연습경기를 하는

3.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상의 과실상계 규정에 대한 평가

2012. 3. 30. 개정된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에는 피해학생의 기왕증을 참작하거나 과실상계를 함으로써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2012. 4. 1. 후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를 원인으로 한 공제급여 청구에는 위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즉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 제19조의2(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는 「학교안전

과정에서 원고 자신이 시도한 레슬링 기술인 영치결이가 풀리면서 상대방 선수와 함께 넘어지면서 자신의 머리가 매트에 닿은 상태에서 머리가 두 학생의 체중에 눌러 목이 꺾인 사고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원고는 경추골절·사지마비·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이고, 영구장해이며, 최소 2인의 간호인이 필요하고, 여명은 사고일로부터 21.61년으로 단축되었다. 피고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고, A체육중학교장은 피고 공제회에 가입하였다. 원고 갑과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 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소송 전 원고 갑의 아버지인 원고 을이 피고 공제회에 공제급여 지급신청을 하자, 피고 공제회는 과실상계를 50%를 적용하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과실상계의 적용 없이 공제급여 전액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피고 공제회는 학교장, 교사 등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피공제자의 과실을 이유로 공제급여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피공제자측의 과실을 사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피고 공제회의 공제급여지급기준은 「학교안전사고보상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그리고 원고들은 기왕치료비와 함께 향후 치료비 및 향후 보조구 구입비를 요양급여로서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기왕치료비만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향후 치료비 및 향후 보조구 구입비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 갑이 군복무를 마친 후 만 22세가 되는 2015. 12. 3.부터 60세가 될 때인 2053. 12. 2.까지를 가동기간으로 산정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해급여는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니라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의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장해급여 산정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갑이 실제로 장래 취업이 가능한 기간인 여명 종료일까지로 가동기간을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가동연한 내로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29. 8. 15.까지만 가동기간으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이미 소요된 간병비와 향후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간병급여는 치료받은 후의 기간 동안에 간병이 실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되어진 간병비에 대하여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기간 중 지출한 간병비는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원고들이 구하는 기왕 간병비는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기간 동안 지출된 것이고, 향후 간병비는 미리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다. 이에 피고 공제회는 원심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공제급여를 지급할 때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상고하였다.

사고보상법」이 제정 및 시행된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며, 이것은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의 공제급여지급기준이 그대로 관련규정에 삽입된 것이다.¹⁹⁾ 이후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공제급여 지급에 있어 과실상계가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소송에서 다투어졌다.²⁰⁾ 소송의 쟁점은 바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당연한 법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별도로 모법의 근거규정이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또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도 문제된다.

그런데 헌법 제75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²¹⁾ 특히 “학교안전법의 입법 취지와 공제급여의 성격 및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위임의 취지, 그리고 모법인 학교안전법에서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사유를 제43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만약 기왕증과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는 위임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그 밖에 달리 학교안전법 시행령에서 지급제한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모법에서 위임한 규정을 찾아볼

19)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집인 공제급여지급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강희원, 김상철,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 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2013, 132면; 박주영,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22면.

20)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21) 대법원 1995. 01. 24. 선고 93다37342 전원합의체 판결.

수 없으므로, 결국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규범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²²⁾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는 기본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성숙되지 않은 다수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고를 전제한 것이며, 특히 과실상계제도는 경제적 지위가 균등한 사인 간에 발생한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시킨 목적으로 인정되는 일반법상의 제도라는 점에서, 사회보험으로서의 성질을 함의하고 있는 특별법상의 공제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상의 과실상계 규정은 입법적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4. 구상권 행사의 문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하면,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의 지급을 한 이후 수급권자가 받은 공제급여의 상당액을 학교안전사고를 유발한 가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제1항). 그런데 피공제자인 학생의 중과실로 인하여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규정에 따라 제한없이 구상권의 행사를 허용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와 체육수업시간과 같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와 같이 안전사고의 원인이 경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중과실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구상권 행사에 차등을 두면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²³⁾ 또한 피공제자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경제적

22)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이 민사사건에서 특정한 법률의 시행령에 대하여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은 1999년 3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관해 무효를 선언한 이후 17년만의 일이다.

23) 김성욱, 전계논문, 172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사회보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태도와 같이 피보험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조두환, “학교안전사고의 민사적 구제에

사정이 곤궁한 경우라면 구상권 행사에 제한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손해의 발생장소가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 필연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학교에서 발생한 것이며, 또한 사회보험의 일환으로 공제급여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중과실의 피공제자에게 획일적으로 최종적인 구상책임을 엄격하게 묻기 보다는 사회보험의 영역에서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이 바로 일반적인 민사사건에서 고려되는 구상권제도와는 차이가 있는 특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IV. 결 론

지금까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교사 등에게 고의, 과실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 등을 구제할 수 있도록 공제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주요내용과 몇 가지 법적 쟁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제급여결정의 적절성 및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적 판단이 아니고 규범적 판단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교사 및 학부모 대표를 일정 수 이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것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이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하면서 기타 관련 전문가들을 적절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균형적인 구성으로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 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를 두기 보다는 독립된 기구로서 운영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결정의 적절성 및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학교·교직원 등의 귀책사유의 존재여부를 전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16면).

혀 고려하지 않고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관련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만 비로소 고려되는 과실상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전제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법정된 범위에서만 직접적으로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의 공제급여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 같이 발생한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된 범위에서만 보상을 받게 되며,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3가지의 급여제한 이외에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또는 준용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공제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허용하게 되면, 이것은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및 해석론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안전법의 입법 취지와 공제급여의 성격 및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위임의 취지, 그리고 모법인 학교안전법에서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사유를 제43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만약 기왕증과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는 위임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그 밖에 달리 학교안전법 시행령에서 지급제한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모법에서 위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는 기본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성숙되지 않은 다수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고를 전제한 것이며, 특히 과실상계제도는 경제적 지위가 균등한 사인 간에 발생한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시킨 목적으로 인정되는 일반법상의 제도라는 점에서, 사회보험으로서의 성질을 함의하고 있는 특별법상의 공제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시행령상의 과실상계 규정은 입법적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의 구상권 행사와 관련하여, 피공제자인 학생의

중과실로 인하여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언제나 당해 규정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를 허용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와 체육수업시간과 같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와 같이 안전사고의 원인이 경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중과실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구상권 행사를 제한없이 인정하기 보다는 구상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사고를 유발한 학생에게 중과실이 있었던 경우라도 경제적 사정이 곤궁한 경우라면 구상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입법론으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희원·김상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 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2013,
- 김상훈,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와 과실상계”, 대법원판례해설 제93호, 법원도서관, 2013.
- 김선정, “학교안전공제의 특성과 시행령의 위법성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생명보험 통권 제459호, 생명보험협회, 2017.
- 김성욱, “체육수업시간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 재산법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019
- 박주영,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 20권 제2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7
- 장승혁,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장내용과 대상”, 새교육 통권 749호, 한국교육신문사, 2017.
- 조두환, “학교안전사고의 민사적 구제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한경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 산정 시 기

왕증 참작과 과실상계를 허용한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연구 제29집, 부산판례연구회, 2018.

[Abstract]

A Study on Special Laws Regulating School Safety Accidents

Kim, Sung-Wook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Special Laws Regulating School Safety Accidents’.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 legal system is designed to rationalize social order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justice. Therefore, the risks should be minimized so that unreasonable results are not continuously increased in the operation of any legal system. It is also necessary that feasible measures be sought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so that unreasonable results do not continue to increas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have lived in school for a long time. Students living in school are victims of safety accidents due to a variety of causes. That is, many accidents occur in most schools. Safety accidents occur in various types. For example, a safety accident occurs during class or physical education. In addition, in school, safety accidents may occur in addition to working hours or sports activities. Students are seriously injured due to safety accidents at school. In Jeju, safety accidents occur in middle

and high schools, but more accidents occur in elementary schools. A safety-related accident in school occurs inevitably in unforeseeable circumstances while children or students are engaged in educational activities. In addition, even in case a matter of responsibility is clear as majority of the persons directly involved in a safety-related accident in school are minor students or a teacher, or school authorities, such an accident has a characteristic that calling to account is not easy as we usually access the accident from educational dimension.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contents and major issues of the special law on safety accidents occurring in schools.

Key words : School, Education, Safety Accidents, Safety Accidents in Schools,
law on prevention and compensation on school accidents